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(생 략) 2.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·2.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(현행과 같음) 2.법 시행령 제268조 <u>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·2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환매조건부 매수</u></p>
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(생 략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 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·2.(생 략)</p>	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 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·2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 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 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u> 다만, 법제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②(생 략)</p>	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u> 다만, 법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</p>	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</p>

<p>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~5.(생 략) <신 설></p> <p>6.~9.(생 략) ②~④(생 략)</p>	<p>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 2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(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u></p> <p>6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 략) 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③ · ④(생 략)</p>	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 <p><u>④ · ⑤(호번변경)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